

강원도립대학교 학생회 정·부회장 선거규정

(제정) 1998-06-19 규정 제032호

(개정) 2010-05-03 규정 제250호

(개정) 2016-04-25 규정 제397호

제1조(선거권) 본교 재학생으로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자에게 부여한다.

제2조(피선거권) 피선거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품행이 방정하고 지휘 통솔력이 있는 자
2.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고 전학기 성적이 B0학점 이상인 자
3. 학칙을 위반하여 근신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

제3조(선거방법) 선거는 직접, 보통, 평등, 비밀선거에 의한다.

제4조(임기) ① 학생회 정·부회장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② 궐위시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, 후임자는 전임자 임기의 잔임 기간 동안 재임한다. 단, 잔임기간이 120일 이내일 경우 부회장이 이를 대행하며, 부회장이 궐위시 부서별 기구 조직순에 의해 대행한다.

③ 학생회 간부의 임기도 이에 준한다.

제5조(선출시기) 선출시기는 임기 만료일 30일 이전에 선출한다.

제6조(선거비용) 선거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학생회비에서 지출한다.

제7조(선거관리위원회) ①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정·부학생 회장 및 대의원 약간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생회장으로 한다.

③ 선거관리위원회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선거일시 결정 공고
2.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무일체
3.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일체
4. 선거 및 입후보자에 관한 공시 사무일체
5. 당선자의 선포 및 공고
6.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일체

제8조(입후보자 등록) ① 정·부회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 등록원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선거일이 공고된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

1. 등록원서
2. 선거권자 30인 이상의 추천서(단, 추천자는 2인 이상을 추천할 수 없다.)
3.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추천서

4. 성적증명서
5. 투표참관인 명단 (투표소별 1인)
6. 개표 참관인 명단 (입후보자 1인외 1인)
7. 서약서 (선거관리위원회 소정양식)

② 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이를 공고한다.

제9조(선거운동 등) ① 선거운동은 해당 입후보자의 등록을 필한 직후부터 수행할 수 있다.

② 선거운동 홍보비용은 학생 자치회비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입후보자는 위원회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. 이를 위반할 때에는 위원회는 입후보 또는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입후보 마감 후 입후보자의 합동 소견발표회를 갖는다. 단, 소견 발표의 시간, 장소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제10조(선거일) 선거일은 위원회 위원장이 투표일 10일 이전에 이를 공고한다.

제11조(투표 및 개표) ① 투표용지는 위원회에서 작성하고, 입후보자의 성명아래 기표한다.

② 선거인은 학생증, 주민등록증, 학생 신상기록카드 중 한가지를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와 대조후 기표용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는다.

③ 투표소 내에는 위원회 위원과 참관인 이외에는 출입을 금한다.

④ 투·개표일시 및 장소는 위원회에서 정한다.

제12조(당선인) ① 위원회는 최고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, 총장의 인준을 받아 이를 공고한다.

②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성적 우수자 순으로 결정한다. <개정 2010.5.3>

③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총 유권자수의 과반수 이상의 직접선거로 과반수 이상 득표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.

제13조(벌칙) 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박탈하거나 당선무효를 결정한다.

1. 추천서를 부당하게 작성한 자
2. 위원, 입후보자 및 유권자에 대하여 폭행, 협박, 유언비어 등을 유포한 자
3. 고의로 부정한 선거운동을 한 자
4. 위원회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
5. 기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자

제14조(기타) 본 선거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한다.

부 칙(1998. 6. 19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본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정·부회장의 임기시작은 당선인 공고일로부터 한다.

부 칙(2010. 5. 3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 4. 25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